

# HANSAE CO., LTD

## CODE OF CONDUCT

이 운영규정은 한세의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협력업체, 공장 또한 일련의 업무 관계를 하는 모든 업체에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.

한세는 윤리와 정직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존중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 여기에 명시된 운영지침은 한세의 협력 업체들이 당사와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

### I. 일반원칙

한세의 협력 업체들은 해당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당사의 협력업체는 임금, 근로조건, 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국가의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입니다.

### II. 환경

한세의 협력 업체는 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해당 국가의 환경법과 국제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III. 차별

한세의 협력 업체는 근로자의 고용 관행에 있어 개인의 능력 이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

### IV.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

한세의 협력 업체는 죄수 노동, 강제 도제식 노동, 채무노동 혹은 어떤 형태이든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. 협력업체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채용 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용하여야 합니다.

### V. 미성년 노동

한세의 협력 업체는 15세 미만의 미성년과 해당국가의 의무교육 해당 연령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. 해당 국가의 노동 관련법이 그 이하의 미성년 노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제 미성년 관련법을 적용한다.

### VI. 임금 및 시간

한세의 협력 업체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 또한 근로시간은 현지 노동법이 규정한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### VII. 근로조건

한세의 협력 업체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최상의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
-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학대를 금지합니다.
- 근로 조건과 환경에 관련된 모든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VIII. 조합의 자유

한세의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의 조합의 자유를 보장합니다. 또한 협력 업체는 근로자들의 단체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

### IX. 반부패 선언

어떤 상황에서도 뇌물은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부패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.

### 모니터링 및 실행

한세의 모든 협력 업체는 위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될 것입니다. 만일 당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가 중단되거나 사업 관계의 종료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.

한세는 위 운영규정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. 운영규정에 대한 의견은 한세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
HANSAE CO., LTD.  
  
Chief Executive Officer KIM KYUNG